

#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0. 13.

제출자 : 서초

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납부방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- 가.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제1항)
- 나.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요금, 발행기관명,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함 (안 제3조제2항)
- 다.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함 (안 제3조제3항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 - 입법예고(2001. 9. 24. ~ 10. 13.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3조(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)**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(이하 "요금계기"라 한다)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"무인발급기"라 한다)에 의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 
②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.  
1. 수입증지요금  
2. 발행기관명  
3.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 
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b>제3조(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납부)</b>	<b>제3조(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)</b>
① ..... <u>수입증지요금계기</u> (이하 “ <u>요금계 기</u> ”라 한다) .....	① ..... <u>수입증지요금계기</u> (이하 “ <u>요금 계기</u> ”라 한다) 및 <u>무인민원증명발급기</u> (이 하 “ <u>무인발급기</u> ”라 한다) ....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요금계기</u> 고유번호	3. <u>요금계기</u> 및 <u>무인발급기</u> 고유번호
③ ..... 규정에 ..... ..... <u>요금계기</u> .....	③ ..... 규정에 <u>의하여</u> ..... ..... <u>요금계기</u> 및 <u>무인발급기</u> .....
.....	.....